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98
----------	-----

2019년 09월 04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년 09월 04일 김혜련 의원
2. 회부일자 : 2019년 08월 13일
3. 상정일자 :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【2019년 09월 04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김혜련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사회복지사들은 복지서비스 직접 제공함으로 인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다양한 위험(복지서비스 이용자의 폭언, 폭력 등)에 노출되어 있음.
- 복지현장에서 직·간접적으로 위험을 경험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업무의 소진 등 위기 및 외상을 경험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대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함.
-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

법적 근거 마련 및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음.

2. 주요내용

- 서울시의 사회복지종사자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하여 사회복지 종사 자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5조 제1항제5호).
- 처우개선 등 사업에서 서울시장의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(안 제9조제1항제5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Ⅲ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개정안의 취지 및 현황

- 개정안은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복지현장에서 직·간접적으로 다양한 위험에 노출 될 수 밖에 없는 바,
- 조례상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 되었음.

2 주요사항 검토

가. 사회복지사 등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중 안전과 인권보호 사항 (안 제5조제1항제5호)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설치) ① 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한다)를 둘 수 있다. 1. ~ 4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</p>	<p>제5조(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설치) ① 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한다)를 둘 수 있다. 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. 안전과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</p>

- 인권은 “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¹⁾”라는 것이 핵심개념으로 시대와 이슈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(The UN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f 1948)을 발표한 이후로 인권의 보편적인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음.
- 인권은 사회복지와 상호보완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, 사회·경제·문화영역 전반에 걸쳐 확대²⁾되어 가고 있음.
- 사회복지의 전형적인 휴먼서비스의 한 분야로서 사회복지사의 수준이 사회복지서비스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면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을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음.
-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논할 때 거론되는 문제점이 i) 사회복지사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의 지위로 인한 열악한 노동조건, ii)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격제도 및 교육훈련 시스템의 미흡, iii) 일부 사회복지 시설과 관련된 비전문성과 비민주성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음.
-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인 수혜대상자 또는 민원주민에 의한 폭언과, 폭행, 성희롱이 상당 수준 발생하고 있는 바, 실정이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대응방안 및 보상방안이 마련되어만 함.
- 또한,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과 보조금이라는 사회복지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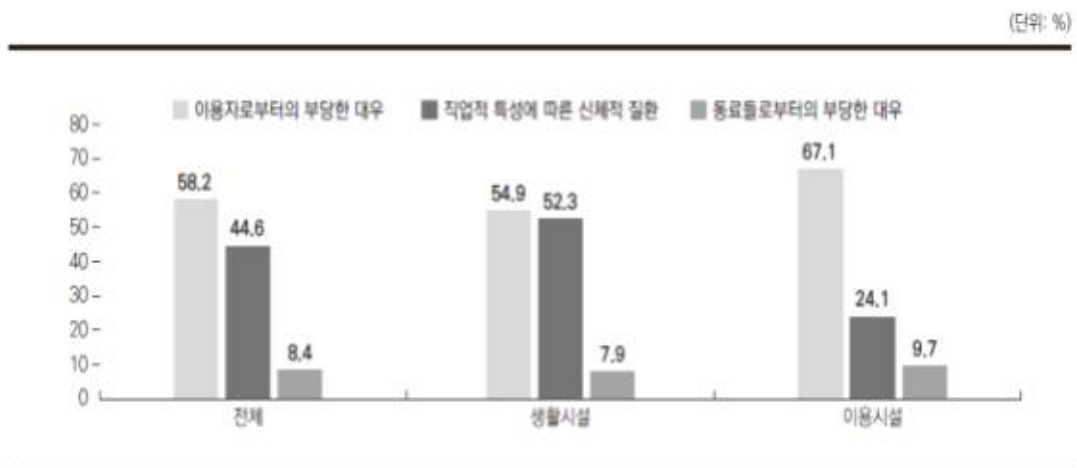
1) Jim Ife, 2006, “인권과 사회복지 서비스 : 기회와 도전, 국가인권위원회(편), 국가인권위원회, 사회복지 분야 인권관점 도입확산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pp. 3-43.

2) 조효제, 2007, 「인권의 문법」, 후마니타스, pp. 319-317

계 구조 하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성과위주 및 실적 위주의 관리통제로 인한 구조적 문제점 존재하며,

- 사회복지시설의 비민주적인 조직체계, 의사소통의 부재, 사회복지사 인권에 대한 결여 등의 문제로 관리자에 의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- 개정안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관한 규정은 현재 사회복지사의 안전 및 인권관련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체계내에서의 보장으로 여겨지므로 타당하다 사료됨.
- 다만,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안전과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’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으로 보여지며, 조례에 따른 안전과 인권 보호의 대상자가 사회복지사인 점을 감안할 때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■ 시설 유형에 따른 사회복지 종사자의 위험 경험 유형



자료: 보건복지부, 한국보건사회연구원. (2017).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.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.

■ 시설 분야에 따른 사회복지 종사자의 위험 경험 유형

(단위: %)



자료: 보건복지부, 한국보건사회연구원. (2017).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.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.

나.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(안 제9조제1항제5호)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처우개선 등 사업) ①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5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	<p>제9조(처우개선 등 사업) ①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.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</u></p> <p>6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

○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문제는 근로욕구 감퇴 및 이직뿐만 아니라

궁극적으로는 이용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질의 악화로 이어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.

- 따라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시설별 표준화된 지침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권 침해에 대한 사전적 개입이 필요함.
- 종사자와 이용자 상호 간의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 및 인권침해 관련 지침, 내부 절차 안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 및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과 지원사업의 안정성·지속성을 위해 “사회복지사 등의 심리안정 지원사업”과 같은 구체화 된 대상자 및 사업의 명확화는 향후 고려해야 할 사안³⁾으로 보여짐.

3 종합 의견

- 사회복지사에 대한 그동안의 주된 논점은 임금, 복지, 노동 시간 등이었음.
- 사회복지사의 노동인권으로서의 중요한 문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‘사상,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노동기본권으로부터의

3) 호주(뉴사우스웨일즈주)의 ‘직업장 보건 및 안전법’(10가지 위험요인과 실천규칙Code of Practice)이나 독일의 ‘노동재해 예방 전략’ 그리고 미국의 ‘사회복지안전법’(메사추세츠주, 켄터키주, 버지니아주)과 같은 사회복지사의 인권보호 제도 도입 검토 고려할 사안이라 보여짐.

배제 또는 불안정한 고용 증가, 폭언폭행 및 감정 노동 등의 문제도 등가치하게 보장되어야 함.

- 개정안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관한 규정은 현재 사회복지사의 안전 및 인권관련 문제에 대하여 사회보장체계 내로 보장한다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사료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【재적위원 11명, 참석위원 9명, 참석위원 찬성 9명, 반대 0명】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혜련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98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08월 07일

발 의 자 : 김혜련, 고병국, 오한아, 여 명,
최 선, 이동현, 김정태, 이광호,
김화숙, 강동길, 오현정, 우형찬,
홍성룡, 김제리, 장인홍, 봉양순,
김소양, 김상진, 이경선, 이영실,
김기덕, 김춘례, 서윤기, 전석기,
장상기, 임종국 의원 (26명)

1. 제안이유

- 사회복지사들은 복지서비스 직접 제공함으로 인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다양한 위험(복지서비스 이용자의 폭언, 폭력 등)에 노출되어 있음.
- 복지현장에서 직·간접적으로 위험을 경험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업무의 소진 등 위기 및 외상을 경험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대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함.
-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 마련 및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음.

2 주요내용

- 서울시의 사회복지종사자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5조제1항제5호).
- 처우개선 등 사업에서 서울시장의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(안 제9조제1항제5호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안전과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

제9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설치) ① 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제9조(처우개선 등 사업)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5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	<p>제5조(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설치) ① 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. 안전과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제9조(처우개선 등 사업)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.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</u></p> <p><u>6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</p>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(처우개선 등 사업)제1항제5호를 신설함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관련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비용추계 곤란
 - 제5조(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설치)제1항제5호의 신설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주 무 관 채소영

☎ 02-2180-7942

e-mail : liz1998@seoul.go.kr